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책임부속서의 채택과 이행

신하온환경연구소

김기순

극지연구소



# I. 머리말

- 남극환경의 취약성
- 환경사고 발생 증가  
Bahia Paraiso호 사고 (1989)  
M/S Explorer호 사고 (2007)  
Nisshin Mauro호 사고 (2007)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책임부속서 (Annex VI) 채택  
28<sup>th</sup> ATCP(Stockholm, June 17, 2005)

# 목차

- 머리말
- 남극조약체제와 책임제도
-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책임부속서의 이행
- 전망



## II. 남극조약체제와 책임제도

- 남극조약체제(ATS)

1. 남극조약(1959)

2. 남극물개보존협약(1972)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1980)

4. 남극환경보호의정서(1991)

5. 권고/ SCAR



## II. 남극조약체제와 책임제도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 1989년 Franco- Australian Proposal  
11th SATCM (Madrid, Oct. 1991) 에서 채택  
1998년 발효

- 27개 조항, 중재의정서에 관한 Schedule, 5개의 부속서(Annex)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환경협약

남극환경 보호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남극조약체제 보완

남극광물개발 50년간 금지(제7조)

## II. 남극조약체제와 책임제도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책임제도 관련규정
  - 제15조 (비상대응조치)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 지역 내의 과학적 연구활동, 관광 및 정부 비정부 활동 수행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조치**를 제공하고,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 제16조 (배상책임)  
“각 당사국은 남극활동과 환경보호의정서 범위 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해야”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채택배경
  - 17<sup>th</sup> ATCM (Venice, 1992)  
법률전문가회의 소집 (Rüdiger Wolfrum), 책임제도 논의 시작
  - 22<sup>th</sup> ATCM (Tromso, 1998)  
working paper 제출 (Eighth Offering).
  - 23<sup>th</sup> ATCM (Lima, 1999)  
Working Group I (Don Mckay), 책임부속서 입안 작업
  - 28<sup>th</sup> ATCM (Stockholm, 2005)  
책임부속서 (Annex IV) 채택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의의**
  - 남극활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비상사태에 대해 **예방조치, 대응조치,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
  - 포괄적 접근방법 대신 **점진적 접근방법**  
대응조치에 중점을 둔 초기 단계의 책임제도로 채택  
추가 협상을 통해 나머지 요소를 포함하는 책임제도를 완성해야
  - 원칙적으로 **민사책임(civil liability)** 적용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목적 (전문, para. 1)

-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비상사태가 남극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고 억제**

환경비상사태의 발생 가능성 감소

대응조치 비용에 대한 책임 확보

운영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국내법 제정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주요 내용

- 1. 책임부속서의 적용영역 (제1조)

-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관광, 물류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제 VI조 5항에 따라 사전 통고를 필요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과 관련된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환경비상사태;
- 비상사태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조치 및 계획;
- 남극조약지역으로 들어온 모든 관광객선;
- 제13조의 개정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박 및 그 활동과 관련하여 남극조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상사태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2. 예방조치와 비상계획

### - 예방조치 (제3조)

각 당사국은 환경비상사태의 위험과 그 잠재적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영자가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 비상대응계획 (제4조)

각 당사국은 운영자가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 생태계에 잠재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를 구성하고 이행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3. 대응조치 (제5조)

- 당사국은 자국 운영자가 그의 활동에서 기인한 환경비상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 운영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의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 이들이 허가한 대리인과 운영자가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권장 (be encouraged)
- 사고를 일으킨 운영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의 당사국이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 대응조치를 취하는 당사국들은 적절히 협의, 조정해야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4. 책임(liability: 제6조)

- 운영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국이 대신 취한 대응조치의 비용을 지불할 책임
- 국가운영자는 대응조치의 비용을 기금(fund)에 지불  
비국가운영자는 기금, 운영자의 당사국 또는 국내법상 이행기구를 운영하는 당사국에 지불, 비용을 받은 당사국은 기금에 지불
- 운영자의 무과실책임
- 국제법상 주권면제  
군함, 해군 보조함, 공용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일으킨 환경적 비상 사태는 주권면제 대상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당사국이 부담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5. 소송 (제7조)

### - 소송주체

환경비상사태를 일으킨 **운영자 대신 대응조치를 한 당사국**

### - 관할법원

운영자가 소속되거나 주된 사업소/ 주 소재지를 둔 **당사국법정**

운영자가 당사국에 소속되지 않고 당사국 내에 주된 사업소/ 주 소재지를 두지 않은 경우 **당사국 운영자의 법정**

### - 비용상환청구소송

대응조치가 시작된 지 3년 이내, 소송 당사국이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국가 운영자에 대한 소송은 대응조치가 시작된 지 15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 - 당사국은 대응조치비용상환을 위해 **국내법상이행기구**를 확보해야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6. 책임 면제 (제8조)

- 환경비상사태가 인명 또는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위/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 환경비상사태가 테러행위, 교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 환경비상사태가 당사국, 당사국을 대신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허가받은 대리인, 운영자의 대응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우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7. 보상한도액(제9조)

### - 선박을 포함한 사고

2,000 톤을 넘지 않는 선박은 최고 100만 SDR까지,

2,000 톤을 넘는 선박 중

2,001 톤부터 30,000 톤까지의 선박은 톤당 400 SDR,

30,001 톤부터 70,000 톤까지의 선박은 톤당 300 SDR,

70,000 톤을 넘는 선박은 톤당 200 SDR 추가

### - 선박이 포함되지 않은 사고 - 300만 SDR까지 책임

### - 보상한도의 예외

환경비상사태가 운영자의 고의/ 부주의하고 비상사태 발생의  
개연성을 인지한 경우의 작위,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경우

### - 정기적 재검토를 통한 보상한도액 수정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8. 보험 기타 재정보증 (제11조)

- 각 당사국은 자국 운영자가 제3자의 대응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 은행 기타 유사한 재정적 기관의 보증과 같은 **재정적 보증**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 중진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자를 포함한 국가운영자에 대해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보유할 수 있다.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9. 기금 (제12조)

- 남극조약 사무국(Secretariat)은 당사국의 대응조치에 의해 발생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기금 제도 운용
- 사무국은 당사국이 채택한 결정에 따라 기금 유지, 관리
- 당사국은 지불되는 상환금에 대한 제안을 ATCM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안은 ATCM에서 채택하는 결정에 따라 승인
- 특정국가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 허용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성과

- “예방조치-대응조치-책임” 의 단계적 책임제도

- 환경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당사국에 대응조치 허용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운영자에 대응조치 비용 부담

⇒ 환경비상사태로부터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제도  
확립

# III. 책임부속서의 법적 체제

- 관제
  - 군함, 해군 보조함 기타 공용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주권면제
  - 어선, 고래잡이선박, 관광용 비행기의 상공비행 적용 배제
  -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복원책임 제외
  - 강제적 이행기구 결여
  - 책임부속서의 발효 지연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이행현황 (ASOC의 책임부속서 승인 촉구)
  - 2006년 **스웨덴** 책임부속서 승인, 국내법 제정
  - 2008년 독일 국내법 제정 준비 중  
2009년 폴란드, 스페인 책임부속서 승인
  - 2010년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미국, 칠레 국내법 제정 준비 중
  - 2011년 핀란드, 페루 책임부속서 승인  
호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미국 부속서 승인 준비 중
  - 2012년 러시아 책임부속서 승인  
현재 6개국(**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핀란드, 페루, 러시아**) 승인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주요국의 국내법

1. 스웨덴

**Act (2006) on Antarctica**

**Ordinance (2006) on Antarctica**

(기존법 개정. 2006.6 의회승인. 대응조치 관련 배상책임 외 **발효**)

- 남극활동 규제 강화(선박오염 규제, permit 발급, 법령위반처벌)
- 환경비상사태의 영향 최소화 의무
- 환경비상사태에 대해 취해진 대응조치의 재정적 책임  
다른 당사국이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대응조치비용 지불기관 : **Swedish Polar Research Institute**
- 책임한도는 책임부속서 규정에 따라
- 대응조치비용은 합리적 조치로 투입된 비용의 평가를 기초로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2. 오스트레일리아

**Antarctic Treaty(Environment Protection) Amendment Bill 2011**

모든 협인당사국이 책임부속서 승인시 발효

- ATEP Act 1980 개정 (ATS의 3가지 조치 이행)

Measure 4(2004): 여행 & 비정부활동을 위한 보험, 비상계획

Measure 1(2005): 환경비상사태에서 발생하는 책임

Measure 15(2009): 남극방문선박의 여행객 상륙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 주요 내용

### A. Schedule 1 - Implementation of Measure 4(2004)

비국가운영자의 남극활동에 대한 **안전성 승인**(safety approval)  
신청, 조건, 허가, 등록, 감시, 위반 및 벌금 부과

극지연구소

⇒ 적절한 비상계획, 보험 기타 비용부담계획 요구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B. Schedule2-Measure1(2005) Implementation of Anne VI

### a. 운영자의 환경보호승인

취득, 발급, 발급조건(합리적 예방조치, 비상계획, 보험 기타 재정 보증), 등록, 감시, 재검토

### b. 환경비상사태 관련 운영자의 의무

각료 등에 즉시 통고, 위반시 2년 신체형/\$13,200,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 책임면제

각료의 지시 준수, 위반시 처벌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운영자에 법원이 지급명령

납극환경책임 특별회계 설치(기금/대응조치 이행 정부에 비용지급

⇒ 운영자의 책임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감독 강화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3. 뉴질랜드

### Antarctica (Environmental Protection: Liability Annex) Amendment Bill 2009

책임부속서 발효일에 의해 명령으로 발효

Antarctic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4 개정

- 운영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 요구
- 운영자는 환경비상사태 발생시 외교통상부장관에 통고해야
- 책임부속서 당사국이 대응조치를 한 경우 운영자의 비용상환책임  
비당사국이 대응조치를 한 경우 고등법원은 운영자에 비용지급명령

# IV. 책임부속서의 이행

## - 주요 내용

운영자에 대한 민사소송시 법무장관의 동의 불필요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운영자 책임(외교통상부장관에 통보의무)

뉴질랜드 운영자 정의 (국가운영자 제외)

환경비상사태 정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의 민사책임(무과실 책임)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 대한 비용지급명령

책임면제

보상한도액

# V. 전망

- **Decision 1 (2005)**

책임부속서 발효 & 당사국 승인 독려에 필요한 조치 매년 평가  
부속서 채택 이후 5년 이내에 상세한 규칙 및 절차 입안을 위한  
협상 재개기간 결정



- **Decision 4 (2010)** **극지연구소**  
부속서 채택 10년 후 협상 재개기간 결정

Decision 1 (2005) 페이지

- **2013.3. 현재 책임부속서 비준국가는 6개국**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의회에 법안 제출  
일본 등은 준비 중

**Thank You !**

극지연구소